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파국적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전면적 사회 대전환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파국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이소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376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주문 및 제안이유	1
III. 검토의견	7
1. 제안취지	7
2. 결의안의 주요 내용	13
3. 결의안에 대한 검토의견	15

I. 제안경위

2024년 9월 26일 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국적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전면적 사회 대전환 촉구 결의안은 2024년 9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주문 및 제안이유

주 문

올해 여름은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기후지옥’이 어떤 모습일지 짐작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끔찍하게 더운 폭염과 몇 장의 달력을 넘겨도 끝나지 않는 열대야, 처음으로 추석에 발령된 ‘폭염 특보’는 파국적 기후위기가 우리 코앞에 닥쳐 있는 일임을 실감하게 한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 폭이 이미 1.5도를 넘겼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으며, 수년 내에 2도 상승선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인류가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하고 있으며,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말처럼 ‘기후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파국적 재앙이 확실하고 명백하게 다가올 때, 재앙에 대비하고 생존의 길을 찾는 것은 정치의 역할이다. 그러나 우리 정치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질문이 사방에서 아우성치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의 일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이 법을 제정하면서 2031년부터 2049년 사이의 감축목표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동시에 ‘정부의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 목표’에 대해서도 현재 재판관 5인이 위헌 의견을 제시하며,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적·정책적 노력이 부족하고 그것이 헌법 위반에 이를 정도임을 지적했다. 기후소송 청구인들이 쏘아 올린 공은 이제 국회와 정부로 다시 넘어왔다.

이제 막 시작된 제22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지만, 그중에서도 확실하고 명백하게 다가오고 있는 파국적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고, 이미 시작된 기후지옥에서 국민을 보호할 안전장치를 신속히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제22대 국회는 파국적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 전면적인 사회대전환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로 나아가는 중간 과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경로 목표를 신속히 수립하고 이를 입법화할 것을 결의한다. 경로 목표는 ‘남아 있는 탄소예산’을 고려하여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특히, 지구 온

도 상승의 속도를 감안할 때 2025년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핵심 조치임을 인식하며, 파국적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 충분한 수준으로 2035년 NDC를 수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감축 목표 설정에 그치지 않고 ‘고통이 수반되는 실행’에 주력할 것을 결의한다. 특히, 화석연료와의 단호한 결별이 필수적임을 직시하며, 즉시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석탄발전의 완전 종결시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내에 감축계획의 실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정부에 신속한 노력을 촉구하며, 국회는 이에 필요한 입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결의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RE100 등 글로벌 탄소무역장벽에 대응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 과제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OECD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평균 이상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국회는 이를 뒷받침할 입법적·예산적 조치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기후재앙을 막는 일이 결국은 거대한 비용이 소요

되는 재정적 노력이라는 점을 철저히 인식하고,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 등 기후위기 대응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IPCC가 제시한 수준(글로벌 GDP의 3~6%)까지 끌어올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탄소세와 강화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효과적인 탄소비용 부과 조치를 도입할 것을 결의한다.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입법적 조치를 제22대 국회에서 마련할 것을 결의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처별로 분산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통합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촉구한다. 이에 대해 정부와 머리를 맞대어 신속한 입법조치에 협력할 것임을 결의한다.

7. 대한민국 국회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식’의 기후재난 대응이 아닌, 모든 사회 인프라를 변화된 기후위험에 맞게 재설계하는 대대적인 사회적 대개조 작업에 즉시 착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그에 수반되는 입법적·예산적 조치에 적극 협력할 것을 결의한다.

8.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앞에 놓인 파국적 기후위기를 막는 데에 있어서 부분적·점진적 노력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전 사회적으로 과감한 대전환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한다. 국회가 앞장서서, 모든 사회 구성원과 함께 담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을 결의한다.

제안이유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헌법소원에 대해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더욱 책임 있는 전방위적인 입법적·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짐. 이번 결정은 기후위기가 위험상황이자 국가의 보호의무가 존재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명확히 하며, 기후위기가 우리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다시 한번 상기시킴.

이미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을 넘어섰다는 연구결과들이 나타나면서, 국제사회가 설정한 기온 상승 목표를 초과했을 우려가 커지고 있음. 실제로 최근 미국 남서부 지역에서는 극심한 폭염으로 최고기온이 50도를 넘어섰고, 지난 4월 아랍에미리트에서는 하루 만에 한 해 동안의 강수량이 쏟아지는 등 극단적인 기상이변들이 나타나고 있음. 우리나라 또한 올해 8월의 폭염 일수가 역대 1위를 기록하였고, 추석 연휴에 유례없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

가 발령되는 등 기후위기의 징후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G7 국가들이 2035년까지 석탄발전소 폐지를 합의한 반면, 석탄발전비중이 약 40%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탈석탄에 대한 국가적 계획이 부재한 상황임. 또한, IPCC에 따르면 풍력과 태양광이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과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뛰어난 에너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음.

기후대응기금이 신설되어 운용 중이지만, 재원이 되는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현저히 낮아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과도한 배출권 할당으로 일부 탄소 다배출 기업들이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실정임.

지금까지의 미온적인 태도에서 한걸음 나아가 제대로 기후위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대응 예산의 획기적인 증액과 정책의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함. 탄소배출권 가격 현실화와 탄소세 도입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후재난 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투입해야 함. 이에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수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위한 첫걸음으로 위의 내용을 의결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제안 취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 따르면, 산업화 이후 지구평균기온은 약1℃ 가량 상승(우리나라는 약 1.5℃, 지구평균의 약 2배)하였고, 이 추세로 상승할 경우 21세기 말까지 3.7℃ 상승을 전망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지구온난화가 진행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홍수,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와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는 등 기후위기가 발생하고 있음.¹⁾

이에 국제사회는 '92년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²⁾에 기반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지구온난화 방지에 힘쓰고 있으며, 2020년부터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체제가 선진국 중심의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체제를 대체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임.

1) 우리나라도 2024년 여름철 전국 평균기온이 25.6도로 평년(23.7도)보다 1.9도 높게 나타나는 등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여름철 평균기온을 넘어서는 등 기상관측아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바 있음.

2)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은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 Development)에서 채택되었으며,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에 따라 각자의 능력에 맞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을 약속하였음. 협약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Parties)이며, 협약의 이행 및 과학·기술적 측면을 검토하기 위해 이행부속기구(SBI)와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A)를 두고 있음.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의 비교]

구 분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목 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1차 5.2%, 2차 18%)	2℃ 목표 1.5℃ 목표 달성 노력
범 위	주로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	온실가스 감축만이 아니라 적응, 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투명성 등을 포괄
감축 의무국가	주로 선진국	모든 당사국
목표 설정방식	하향식	상향식
목표 불이행시 징벌 여부	징벌적 (미달성량의 1.3배를 다음 공약기간에 추가)	비징벌적
목표 설정기준	특별한 언급 없음	진전 원칙
지속가능성	공약기간에 종료 시점이 있어 지속가능한지 의문	종료 시점을 규정하지 않아 지속가능한 대응 가능
행위자	국가 중심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독려

자료: 환경부

파리협정은 지구평균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well below)으로 유지하고, 나아가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의 추구(pursuing efforts)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당사국에게 5년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이행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20년 말까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장기 비전 및 전략인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Long-term low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의 수립을 요청하였음.

참고로 2015년 파리협정을 비준한 195개국은 5년마다 더 강화된 목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2020년에는 2030년까지의 목표를 제출하였고, 이후 한국 정부도 2025년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2035년까지의 감축계획 목표를 제출하여야 함.

2023년 기준 한국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6억 2,420만톤으로 전년 대비 4.4% 감소하였으나, 국제에너지기구 등 국제사회에서 공개된 통계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는 세계 11위 수준으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2018년 10월 제48차 IPCC 총회에서 채택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서는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 폭을 1.5℃ 이하로 억제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 실현을 위해 전세계가 노력하여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하며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을 0(net zero)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명시적으로 규정³⁾하였고, 동 법 시행령에서는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 C)를 2018년 대비 40%⁴⁾로 명시하였음.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①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727.6백만톤) 대비 40%인 291백만톤 감축을 위해 에너지전환, 산업, 수송, 국제감축 등 부문별 감축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2031년~2049년까지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아직 미비한 상황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문별 감축목표]

(단위: 백만톤CO2e, 괄호는 '18년 대비 감축률)

구분	부문	2018 실적	2030 목표		주요 감축수단
			기존 NDC ('21.10)	수정 NDC ('23.3)	
배출량(합계)		727.6	436.6 (40.0%)	436.6 (40.0%)	
배출	전환	269.6	149.9 (44.4%)	145.9 (45.9%) ¹⁾	- 전원믹스 재구성(석탄↓, 재생에너지↑ 등) - 전력시장 개선 등 수요 효율화
	산업	260.5	222.6 (14.5%)	230.7 (11.4%)	- 공정 효율화, 연·원료 전환 - 배출권거래제 고도화를 통한 자발적인 감축활동 유도
	건물	52.1	35.0 (32.8%)	35.0 (32.8%)	- 제로에너지건축, 그린리모델링 - 건물 효율개선
	수송	98.1	61.0 (37.8%)	61.0 (37.8%)	- 무공해차·선박 보급 - 내연차 기준강화, 주행거리 감축
	농축수산물	24.7	18.0 (27.1%)	18.0 (27.1%)	- 저탄소 농축산업 기술 보급 - 설비 효율화·저탄소화
	폐기물	17.1	9.1 (46.8%)	9.1 (46.8%)	- 폐기물 원천감량 -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
	수소	(-)	7.6	8.4 ²⁾	- 그린수소 실증 및 인프라 구축 - 수소 활용범위 확대
	탈루 등	5.6	3.9	3.9	-
흡	흡수원	(-41.3)	-26.7	-26.7	- 산림·습지 보호·복원

4) (기존) 2018년(7억 2,700만톤) 대비 26.3% → (상향) 2018년 대비 40%를 감축

* 2018년 7억 2,700만톤 → 2030년 4억 3,600만톤

수 및 제 거		)			- 도시숲 등 신규흡수원 확대
	CCUS ⁴⁾	(-)	-10.3	-11.2 ³⁾	- 근거법 제정 및 상용화 R&D CCS 저장소 확보
	국제감 축	(-)	-33.5	-37.5 ⁴⁾	- 국외 감축활동 수행 후 크레딧 거래

1) 태양광, 수소 등 청정에너지 확대에 400만톤 추가 감축

2) 수소 수요량 최신화에 따른 공급량 확대 반영 (블루수소 +10.5만톤 → 온실가스 0.8백만톤 ↑)

3) 국내 CCS 잠재량 반영(0.8백만톤), CCU 실증결과 등을 고려한 확대(0.1백만톤)

4) CCUS(Carbon capture and storage) :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5) 민관협력 사업 발굴 및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국제감축량 400만톤 확대

자료: 환경부

법률안 제정 당시에는 중장기 감축목표의 시점과 관련하여 1차 ND C 목표 시점인 2030년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고, 2차 NDC의 경우 목표시점이 결정되지 않아 이를 고려하여 유연하게 중장기 감축목표 시점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제정안이 통과(2021.8.31.)된 바 있음.

그러나, 2031~2049년까지 19년간의 감축목표에 대한 대강의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2050년 탄소중립 목표시점까지 점진적·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므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고,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헌법 불합치⁵⁾(2026년 2월 28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적용) 판결을 받은 바 있음.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기후변화가 현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기후변화 대응

5)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후속입법을 주문하며 당분간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

이 환경권과 직결된 문제임을 명확히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헌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국회는 2026년 2월 28일까지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반영하여 강화된 기후위기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제1항을 개정하여 2030년 이후 2050년까지의 감축목표에 대한 정량적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동 결의안의 취지는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2. 결의안의 주요 내용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사회 대전환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주문1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중간경로를 설정하고, 이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하면서, 2025년 말까지 제출해야 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충분히 높은 수준으로 설정해 파국적 기후재앙을 방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주문2는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석탄발전의 완전 종료시점을 설정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22대 국회 전반기에 감축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입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것임.

주문3은 기후위기 대응 뿐 아니라 RE100 등 글로벌 탄소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비중 대폭 확대를 우선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입법적·예산적 조치를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것임.

주문4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전환 등 관련 예산을 IPCC가 제시한 수준(글로벌 GDP의 3~6%)까지 증액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기후위기 심각성에 상응하는 책임있는 재정투자의 실행 및 국회 차원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임.

주문5는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한 탄소비용 부과조치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주문6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의 통합 추진을 위해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촉구하는 것임.

주문7은 변화된 기후위험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후 재난 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신속히 개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된 입법적·예산적 조치를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것임.

주문8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노력보다 과감하고 전 사회적인 대전환의 필요성을 명확히 하면서 국회가 주도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변화를 이끌어갈 것을 결의하는 것임.

3. 결의안에 대한 검토의견

동 결의안은 급박한 기후위기의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결단이 필요함을 분명히 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같이, 현재의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환경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이는 보다 강력하고 구체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세계기상기구(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는 2024년부터 2028년 사이에 지구의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일시적으로 1.5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80%에 달하고 있다고 경고⁶⁾하는 등 기후위기가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기후위기 대응을 목표로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중간 목표와 실행 계획이 필요하나, 현재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 속도가 국제적 기준에 비해 미흡한 상황이며,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 간 연계가 부족한 상황임.

동 결의안은 탄소중립 목표와 관련하여 2035년까지의 중간 감축 경로를 법제화함으로써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춘 탄소 감축 경로를 제시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에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6) 세계기상기구(WMO), 'WMO Global Annual to Decadal Climate Update 2024-2028', 2024.6.5.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 중 하나이며, 2022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이 전체 발전량의 9.22%에 불과하여 세계 평균인 30.3%에 비해 낮은 상황⁷⁾임.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발전비율]

(단위: GWh,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발전량(GWh)	562,219	578,014	594,609	589,200	579,999	611,015	626,448
신·재생에너지 발전량(GWh)	41,049	47,306	53,688	52,341	43,124	50,657	57,780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7.30	8.18	9.03	8.88	7.44	8.29	9.22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실적조사'

주요 선진국이 석탄발전 퇴출을 목표로 하는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도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임.

RE100⁸⁾과 같은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를 이행하지 않으면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무역장벽이 본격적으로 시행

7) 국제 기준에 따라 주요 국가들의 1차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비율을 비교해 보면, 2023년 기준 한국(2.6%)은 독일(19.6%), 이탈리아(19.2%), 영국(14.8%), 프랑스(13.6%), 호주(9.8%), 미국(8.4%), 일본(7.8%) 등 다른 선진국들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8) RE100은 '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RE100에 가입한 기업들은 100% 재생 가능 에너지 전력 사용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됨에 따라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큰 만큼 동 결의안은 탄소 중립 목표와 그 과정에서의 중간 목표를 법제화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취지로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투자가 미흡한 상황에서 동 결의안은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를 강화해 기후위기 대응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및 기후적응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확충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임.

또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통합적이고 일관된 추진을 위해 부처간 분산된 정책을 통합하고자 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환경부, 산업부 등으로 분산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현재 구조를 극복하고, 정부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환경부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므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포함하여 기후변화 총괄 대응을 위한 효율적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9) 김소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163, 2024.9.24. 발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기후위기 대응의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임.

결론적으로, 동 결의안은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고려할 때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수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고,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책임 있는 기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